

검 토 보 고

파주시생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 동 조례안은 19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현재 시행중인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청문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청문조항을 삭제함.(안제3조)

나. 과태료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일치토록 개정함.(안별표1)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임.

- 그간 폐기물 과태료의 부과금액의 적용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159호)를 적용하여 왔으나 금번 개정조례에서 상위법에서 명시된 부과항목중 현행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15개 항목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과태료 금액부과시 재량의 여지가 있던 일부 항목에 대해 부과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제거하였음.
- 또한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이 같게 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형평성있게 규정되어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청문조항은 행정절차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 다만,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중 11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12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중 5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중 3호 나목의 2에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객석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나목에 66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점을 감안할 때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